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제29조(약관의 변경) ①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③ ~ ⑤ (생 략)	제29조(약관의 변경) ① ---------- 변경내용(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---------- ②----------법령의 개정으로-----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